

사람이 먼저인 인권사회, 인권국가를 위한

## “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”

- [1]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
- [2] 선거권, 피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
- [3]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
- [4] 장애인, 어린이, 청소년,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장
- [5] 군 인권 보장과 군 사법개혁
- [6]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
- [7]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
- [8] 동아시아 인권·평화 공동체 추진
- [9]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법제 마련
- [10]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

### [1]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

- 촛불집회,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 확대
- 합법적 시위의 기준 완화 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적극 확대
- 주민, 주변 상가지역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를 마련
- 주민등록제도 전면적 개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악용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
- 수사 필요성 등 긴급한 공공목적 외 주민등록번호 요구, 수집, 이용의 금지

### [2] 선거권, 피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

-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연령을 하향 조정
-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참정권 확대
- 투표시간 연장하여 비정규직, 직장인 등의 참정권 실질적 보장

### [3]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

-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을 금지하고, 친인권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및 이행체계 강화
-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, 연령, 인종, 피부색, 출신민족, 지역, 장애, 신체 조건, 종교, 정치적 입장, 성적 지향, 결혼 유무, 임신, 병력,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
- 시정명령권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적극적 구제수단 도입
- 학교, 검찰, 경찰, 군대 등 국가기관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및 강화
-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“인권교육원”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 개발, 시행,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

### [4] 장애인, 어린이, 청소년,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장

- 모든 국민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 보호 강화
- 장애 등급제 폐지, 탈시설-자립생활 권리보장,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언어 인정 등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
-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확대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
- 『어린이·청소년 인권법』 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장
-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,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인정, 모든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
- 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 구호 및 지원 시스템 확보

### [5] 군 인권 보장과 군 사법개혁

-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내부의 인권 침해적 요소 해소 등 군 인권의 적극적 보장
- 계급별 생활관 설치, 군 음부즈만제도 도입 등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추진 등
- 군 영창제도 폐지 등 군 사법개혁으로 법치주의 확대

#### **[6]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**

-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국가의 보호 강화
-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, 피해자에게 지원금 신속 지급
- 특히 여성, 어린이 등을 위한 전문 경찰관 배치와 신변 보호, 피해자 지원 복지센터 확대 등 통한 인권 보장 강화

#### **[7]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**

- 피의자에게 수사 초기부터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
- 검찰·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 원천 차단
- 경찰서, 검찰청 등 323개 수사기관에 국가고용 상주변호사 배치
- 5년 동안 1000명의 형사공공변호인 구성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 확대

#### **[8] 동아시아 인권·평화 공동체 추진**

-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·평화 공동체를 구성하여 높은 차원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현
- 『동아시아 인권·평화 공동체 선언』 추진
- 해외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보호기구 설치
-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 침해 및 현재 진행중인 비인권적 상황을 정리하고 개선
- 야스쿠니신사 합사 동포 유해 봉환 위한 외교적 노력
-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 및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 강화
- 각 국가가 보편적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력

#### **[9]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법제 마련**

- 민주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 이행
- 이주노동자와 가족보호 협약, 강제실종방지협약, UN 사형제 폐

- 지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가입
- 비준한 인권조약의 유보조항 철회
- 주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 마련
- 양심 및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의 사회복지기관 근무 등 대체 복무제 도입으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 달성

#### [10]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

- MB 정부하에서 심각하게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회복하고, 이를 통하여 국제수준의 인권정책이 추진, 실행되도록 함
-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
-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사, 예산 등의 독립성 보장
- 부산, 대구, 광주에만 있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정비
-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이 인권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함